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고 제2024-839호

고척동 241번지 일대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안) 주민공람 공고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동 241번지 일대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의2(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8일

구로구청장

1. 공람기간 : 2024년 4월 18일 ~ 2024년 5월 2일(15일간)
2. 공람장소 : 구로구청 도시개발과(구로구 가마산로 245, 본관4층 ☎02-860-2272)
3. 공람사유 : 고척동 241번지 일대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안) 주민공람
4. 공람내용 : 고척동 241번지 일대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안)
5. 기타사항 : 본 공람공고에서 토지이용계획,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층수, 기타 계획내용 등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 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관계도서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7. 의견제출 : 붙임 의견서 양식을 작성하여 공람기간 내에 공람장소로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척동 241번지 일대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안)

1. 관리지역의 규모 및 정비방향

가. 관리지역의 명칭 : 고척동 241일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나. 관리지역의 위치 및 면적

구분	관리지역 명칭	위치	면적(㎡)	비고
신규	고척동 241일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고척동 241일대 일대	98,735.6	-

2. 토지이용 기본 계획

가. 토지이용계획(안)

구 분	면적(㎡)						비고
	계	획지	정비기반시설 등			기타용지	
			소계	도로	공원		
합계	86,134.9 (98,735.6) ¹⁾	77,165.4	8,969.5	6,427.5	1,542.0	1,000.0	-
사업가능1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10,634.9	10,318.0	316.9	316.9	-	-	-
사업가능2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13,983.3	12,537.4	1,445.9	445.9	-	1,000.0	-
사업가능3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4,775.8	4,675.7	100.1	100.1	-	-	-
사업추진4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8,066.6	7,089.3	977.3	977.3	-	-	-
사업추진5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8,095.8	7,406.0	689.8	289.8	400.0	-	-
사업추진6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8,065.3	7,363.9	701.4	701.4	-	-	-
사업가능7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17,676.9	16,123.6	1,553.3	1,553.3	-	-	-
사업가능8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14,836.3	11,651.5	3,184.8	2,042.8	1,142.0	-	-

1) () : 사업추진외구역 포함

구 분			면적(m ²)	구성비(%)	비 고
계			98,735.6	100.0	-
시행 구역	공동 주택 용지	소계	77,165.4	78.2	
		A-1 사업가능1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10,318.0	10.5	-
		A-2 사업가능2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12,537.4	12.7	-
		A-3 사업가능3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4,675.7	4.7	-
		A-4 사업추진4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7,089.3	7.2	
		A-5 사업추진5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7,406.0	7.5	
		A-6 사업추진6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7,363.9	7.5	
		A-7 사업가능7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16,123.6	16.3	
		A-8 사업가능8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11,651.5	11.8	
	정비 기반 시설	소계	8,969.5	9.1	-
		- 도로	6,427.5	6.5	
		B-1 주차장	(1,142.0)	-	공영주차장 연면적 900m ²
		C-1 공원	1,000.0	1.0	
		D-1 공공시설1	400.0	0.4	청소년시설
		D-2 공공시설2	1,142.0	1.2	노인복지시설, 어린이집 (공영주차장 중복결정)
시행 구역외	소계		12,600.7	12.8	-
	-	도로	9,198.3	9.3	-
	E-1	자연녹지지역	219.0	0.2	-
	E-2	근린생활시설용지 등	3,183.4	3.2	-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 사업가능구역 분할 및 통합 사업추진 가능하며, 관리계획 변경을 통한 재검토 필요

※ 향후 E-2구역 통합개발 시 도로 확폭(8m→12m)할 경우 용도지역 종상향 가능토록 함

나. 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1) 도시계획도로

-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효율적·계획적 추진을 위하여 기존 가로체계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기반시설(도로, 공원 등)을 확대 조성하여 자발적 정비를 유도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형 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3	5	6	국지	150	개봉동 108-1	개봉동 250-8	일반	서고 제2호 (1974.01.14.)	
변경	중로	3	5	12	국지	150	개봉동 108-13	고척동 250-104	일반	-	
기정	소로	3	나	6	-	-	-	-	-	-	
변경	소로	1	나	8~10	국지	289	고척동 241-171	고척동 산 13-16	일반	-	
기정	소로	2	라	7~9	-	-	-	-	-	-	
변경	중로	3	라	12	국지	76	개봉동 113-14	개봉동 111-15	일반	-	
기정	소로	3	마	6	-	-	-	-	-	-	
변경	소로	2	마	8	국지	129	고척동 241-23	고척동 233-20	일반	-	
기정	소로	3	바	6	국지	-	고척동 241-239	고척동 233-19	일반	구고 제2009-95호 (2009.10.07.)	
변경	소로	3	바	6	국지	295	고척동 241-239	고척동 233-19	일반	-	
기정	소로	2	사	8	국지	140	개봉동 108-5	개봉동 107-3	일반	서고 제2호 (1974.01.14.)	
변경	중로	3	사	12	국지	295	개봉동 115-5	개봉동 107-3	일반	-	
신설	소로	2	가	9	국지	256	고척동 241-63	고척동 323	일반	-	
신설	소로	3	다	8	국지	218	고척동 245-3	개봉동 108-9	일반	-	
신설	소로	2	아	8	국지	60	고척동 241-276	고척동 241-50	일반	-	
신설	소로	1	자	10	국지	95	고척동 250-109	고척동 241-11	일반	-	
신설	소로	3	차	5~6	특수	124	고척동 241-336	고척동 241-12	보행자 전용	-	
신설	소로	3	카	5~6	특수	114	고척동 241-137	고척동 241-295	보행자 전용	-	
신설	소로	1	타	10	국지	114	고척동 241-131	고척동 241-63	일반	-	
신설	중로	3	파	12	국지	60	고척동 249-82	고척동 241-282	일반	-	
폐지	소로	2	가	8	-	-	-	-	-	-	
폐지	소로	3	다	6	-	-	-	-	-	-	

2) 공원

-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공간 제공을 위한 소공원을 계획

구분	도면 표시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C-1	공원	소공원	고척동 241-26 일대	-	증)1,000.0	1,000.0	-	-

3) 주차장

- 기존 공영주차장의 기능 유지를 위해 신설되는 공공시설과 연계하여 공영주차장 중복결정

구분	도면 표시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	주차장	고척동 241-21	502	감)502	-	서고 제 2020-100호 (2020.05.21.)	공영 16대 (미설치)
폐지	-	주차장	고척동 241-50 외 2필지	506	감)506	-	서고 제 2020-187호 (2020.09.24.)	공영 17대 (준공)
신설	B-1	주차장	개봉동 108-5일대	-	증)1,142	1,142	-	지상 : 공공시설 / 지하 : 공영주차장 20대 중복결정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구분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주차장	개봉동 108-5일대	면적	-	증)1,142 ㎡	1,142㎡	-	총 연면적 900㎡
			높이	-	지하1층	지하1층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안)

- 「2030 서울생활권계획」 고척·개봉 지역생활권계획 상 부족시설 및 보행소외권 발생시설(공원, 주차장, 노인여가복지시설, 공공체육시설)과 「구로구 생활SOC 종합계획」 상 청소년시설, 공공체육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복합화할 수 있도록 사업가능구역별 공동이용시설 설치시 주차장, 청소년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공원 등을 분담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함
- 계획세대수별 주택법 의무시설과 생활권 부족시설을 고려하여 공동이용시설을 확보하도록 계획

○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구분	세대수	기준면적	설치기준	비고
사업가능1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331세대	1,034.4㎡ 이상	세대당 2.5㎡ X 1.25 이상 설치	
사업가능2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401세대	1,253.1㎡ 이상		
사업가능3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188세대	587.5㎡ 이상		
사업추진4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256세대	800.0㎡ 이상		
사업추진5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231세대	721.9㎡ 이상		
사업추진6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236세대	737.5㎡ 이상		
사업가능7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546세대	1,706.2㎡ 이상		
사업가능8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402세대	1,256.3㎡ 이상		

※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제8조의4(주민공동시설) 100세대 이상 ~ 1,000세대 미만 기준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다. 교통처리 계획(안)

- 주변과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기존 도로망 계획을 유지하며, 증가하는 교통량 등을 고려하여 모아타운 내 내부도로 확폭(6~8m→8~10m) 및 진출입 도로와의 연계를 위한 주가로 확폭(6~8m→12m) 계획
- 지형 여건 및 도로의 기능 변화를 고려하여 보행자전용도로 2개소 설치

구 분	계획내용	비고
진출입동선	- 진출입 불허구간 지정, 사업지 내부 도로 확폭에 따른 차로 운영계획 수립	-
대중교통 및 보행	- 구역별 보도형 건축한계선(3m) 지정 및 공공보행통로 확보 - 사업지 내 보행자 전용도로 설치 - 사업지 내부 보행단절지점 횡단보도 설치(21개소, 고원식횡단보도 포함)	-
주차시설	- 향후 건축계획 시 법정주차 및 주차수요 이상의 주차대수 확보	-
교통안전 및 기타	-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 - 노면표시 및 과속방지턱 설치	-

라. 거점사업에 관한 계획 - 해당사항 없음.

마. 거점사업 이외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추진계획

1) 사업시행구역

구 분	면적(㎡)			사업계획					비 고
	계	공동주택 용지	정비기반 시설	토지등 소유자	기존 호수	시행자	추진 단계	최초 결정일	
합 계	86,134.9 (98,735.6)	77,284.8	8,850.1	-	1,401	-	-	-	-
사업가능1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10,634.9	10,318.0	316.9	-	145	-	-	-	-
사업가능2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13,983.3	12,537.4	1,445.9	-	240	-	-	-	-
사업가능3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4,775.8	4,675.7	100.1	-	104	-	-	-	-
사업추진4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8,066.6	7,089.3	977.3	-	85	-	-	-	-
사업추진5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8,095.8	7,406.0	689.8	-	107	-	-	-	-
사업추진6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8,065.3	7,363.9	701.4	-	176	-	-	-	-
사업가능7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17,676.9	16,243.0	1,433.9	-	277	-	-	-	-
사업가능8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14,836.3	11,651.5	3,184.8	-	267	-	-	-	-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바. 기타(건축협정)에 관한 계획(안)

1) 건축협정 구상(안)

- 「건축법」 제77조의4에 따른 건축협정의 체결로 「건축법」 제77조의13에 따른 특례 적용 계획

구 분	위치	면적(㎡)	특례사항	특례적용사유	비고
사업가능1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고척동 241-2일대	10,634.9	공통사항 - 건축법 제61조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 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 - 건축법 제53조 지하층,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통합설치	공통사항 - 경관 특화를 위한 창의적인 배치 건축물 계획 - 쾌적한 가로환경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한 통합 설치	-
사업가능2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고척동 241-177일대	13,983.3			
사업가능3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고척동 323일대	4,775.8			
사업추진4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고척동 241-11일대	8,066.6			
사업추진5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고척동 241-22일대	8,095.8			
사업추진6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고척동 241-84일대	8,065.3			
사업가능7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고척동 249-113일대	17,676.9			
사업가능8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개봉동 111-8일대	14,836.3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사.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물의 밀도계획

1) 건폐율에 관한 계획

사업구역	용도지역	건폐율(%)	비고
사업가능1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제2종일반주거지역	60%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4조」 준용
사업가능2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제2종일반주거지역	60%	
사업가능3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제3종일반주거지역	50%	
사업추진4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제2종일반주거지역	60%	
사업추진5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제2종일반주거지역	60%	
사업추진6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제2종일반주거지역	60%	
사업가능7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제3종일반주거지역	50%	
사업가능8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제3종일반주거지역	50%	

2) 용적률에 관한 계획

도면 표시	구분 사업구역	위치	용적률(%)		높이	비고
			기준	상한		
A-1	사업가능1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고척동 241-2일대	200	250	사업시행 계획인가에 따름	-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의5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공급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 같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공동시설을 설치하거나 제49조에 따른 임대주택 20% 이상 건설·공급하여 상한용적률 적용
A-2	사업가능2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고척동 241-177일대	200	250		
A-4	사업추진4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고척동 241-11일대	200	250		
A-5	사업추진5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고척동 241-22일대	200	250		
A-6	사업추진6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고척동 241-84일대	200	250		-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의5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공급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 같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공동시설을 설치하거나 제49조에 따른 임대주택 20% 이상 건설·공급하여 상한용적률 적용
A-3	사업가능3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고척동 323일대	250	300		
A-7	사업가능7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고척동 249-113일대	250	300		
A-8	사업가능8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개봉동 111-8일대	250	300		

※ 모아주택사업 시행 시 건축물의 규모(높이, 밀도 등)는 향후 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정 가능함

※ 향후 공항시설법에 따른 높이제한이 변경될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계획
(사업구역설정, 용도지역, 높이 등) 수립 가능토록 함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1. 기준용적률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에 따른 용적률
2. 상한용적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
3. 상한용적률의 적용 :

- ① 사업가능1,2구역, 사업추진4,5,6구역은 제1종일반주거지역 및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기준용적률 200%)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기준용적률 200%)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사업가능3,7,8구역은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기준용적률 200%)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기준용적률 250%)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의5에 따라 상향된 용도지역의 용적률에서 종전 용도지역의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50 범위 내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임대주택 건설·공급
- ②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공동시설을 설치하거나 제49조에 따른 임대주택 20%이상 건설·공급하여 상한용적률 적용
- ③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8조 및 제43조의4에 따라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 시에는 법적상한용적률을 초과하여 용적률을 정할 수 있음

아. 건축물의 배치·형태·용도·건축선 등에 관한 계획

1) 건축물의 배치 및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조서

구 분	적용지역	계획 내용	비고
건축한계선	가로변	- 사업가능구역 1,2,3,6 : 2m 적용 - 사업추진구역 4,5 : 2m 적용 - 사업가능구역 7,8 : 3m 적용 - 가로환경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건축한계선 - 건축한계선으로 조성되는 전면공지는 보도부속형으로 조성	- 가로환경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건축한계선
저층부 가로활성화시설 배치구간	가로변 (지형단차 활용)	- 가로활성화시설 배치구간은 가로활성화가 필요한 주요 가로로 가로의 1/2이상 대지안의 공지 또는 건축한계선에 맞추어 건축물의 저층부(1층 이상)를 설치하고, 해당 공간에는 근린생활시설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등을 연도형으로 조성 ■ 가로활성화 권장용도 - 「주택법」 제2조 제13호, 제14호에 의한 부대·복리시설 -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44조 공동이용시설¹⁾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커뮤니티가로 활성화를 위한 개방형 공동이용시설 배치 유도	- 근린생활시설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등 연도형으로 조성 - 진입부 저층부 가로 활성화 유도

1) 공동이용시설 내 서울형 키즈카페 시설 추가

2)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 조서

구 분			계획 내용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사업가능1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유형	- 공동주택
	사업가능2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 「주택법」 제2조 제13호, 제14호에 의한 부대·복리시설 -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44조 공동이용시설¹⁾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사업가능3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사업추진4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사업추진5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사업추진6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사업가능7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사업가능8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1) 공동이용시설 내 서울형 키즈카페 시설 추가

3) 가이드라인(안)

구 분		계획 내용
배치계획 (전 체)	대지 및 경계부 조성계획	- 데크 하부를 활용하여 테라스하우스, 근린생활시설, 커뮤니티시설 등을 배치 - 단지와 주변부 간의 레벨 차이 극복을 위한 옹벽형식 설치금지 (단차 발생 시 조정, 석축 등으로 설치) - 열린 단지조성을 위해 담장 및 울타리 설치 금지
	단지배치계획	- 보행중심의 통행축 배치, 보행공간 조성을 통해 열린 경관 형성 -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각 영역의 성격에 맞는 공간 조성 · 학교변 :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자연감시가 가능한 주동배치 고려 · 가로변 : 지형의 단차를 활용한 공간계획을 수립하고 가로친화형 배치계획 수립 - 학교, 공원 등 주변과의 조화를 고려한 다양한 유형의 주거타입 계획
	녹지계획	- 단지 내·외부를 연결하는 부분에 다양한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단지내 공간의 공공활용성 확보 - 각 사업가능 구역들은 통일감 있는 조경식재 사용하여 하나의 단지처럼 녹지축 조성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공동주택)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 개별 사업 구역간 색채, 입면 디자인, 포장 등이 조화롭게 조성될 수 있도록 디자인 계획 수립 - 시각적 개방감, 일조, 색채 및 조망 확보 등을 위한 건축물 디자인 특화 권장 - 주 통행로인 고척로33길, 고척로27마길 변은 가로에 대응한 입면 특화계획 수립
	스카이라인 및 경관계획	- 구릉지와 조화로운 경관을 조성하고 대상지 주변을 고려한 지형순응형 스카이라인 계획 - 일률적인 층수계획은 지양하고, 다양한 층수를 적용하여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형성 - 단기간 담장 등의 설치 지양하고, 열린 단지를 조성하여 단지내 가로접근성 향상
생활가로 (근린생활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 경사지형 극복을 위해 조성한 데크 하부를 활용하여 근린생활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계획 - 가로 및 주변지역으로 열린형태의 연도형 근린생활시설 배치
	보행동선계획	- 기존의 동선 유지, 단지내 보행공간 확보, 인접한 사업지 연계 등 보행 동선이 단절되지 않도록 계획 - 학교 가는 길은 건축한계선을 활용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 주 보행축 및 공공보행통로와 연계한 보행자전용도로 조성

자. 임대주택의 공급 및 인수계획

1) 임대주택 공급 계획

구 분		위 치	전체세대수	임대주택세대수	조합/일반분양	비 고
도면 표시	사업구역					
합 계		-	2,591	611	1,980	-
-	사업가능1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고척동 241-2일대	331	81	250	-
-	사업가능2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고척동 241-177일대	401	120	281	-
	사업가능3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고척동 323일대	188	55	133	
	사업추진4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고척동 241-11일대	256	52	204	
	사업추진5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고척동 241-22일대	231	49	182	
	사업추진6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고척동 241-84일대	236	48	188	
	사업가능7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고척동 249-113일대	546	160	386	
-	사업가능8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개봉동 111-8일대	402	46	356	-

※ 상기의 세대수, 임대주택수 등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준공인가 등 사업시행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차.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98,735.6	-	98,735.6	100.0	
용도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26,076.1	감) 18,811.2	7,264.9	7.4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71,112.8	감) 59,156.8	11,956.0	12.1	
	제2종일반주거지역	1,327.7	증) 45,297.6	46,625.3	47.2	
	제3종일반주거지역	-	증) 32,670.4	32,670.4	33.1	
	자연녹지지역	219.0	-	219.0	0.2	

카. 특별건축구역에 관한 계획

1) 특별건축구역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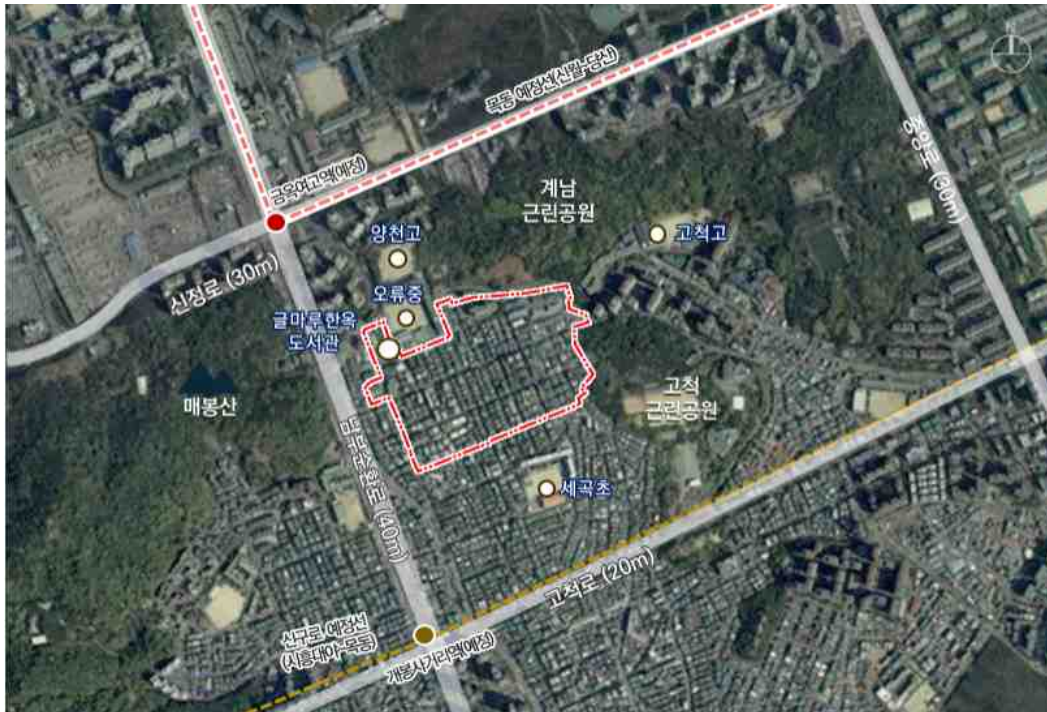
- 「건축법」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지정으로 모아주택구역의 통합적 계획이 가능하도록 하고, 「건축법」 제73조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 배제 또는 일부 완화가 가능하도록 계획

구분		면적(㎡)	계획내용	계획사유	비고
도면 표시	사업구역				
특별 건축 구역	사업가능1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10,634.9	- 「건축법」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지정	- 경관 특화를 위한 창의적인 배치 건축물 계획 -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주차장 확대 설치	
	사업가능2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13,983.3			
	사업가능3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4,775.8			
	사업추진4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8,066.6			
	사업추진5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8,095.8			
	사업추진6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8,065.3			
	사업가능7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17,676.9			
	사업가능8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14,83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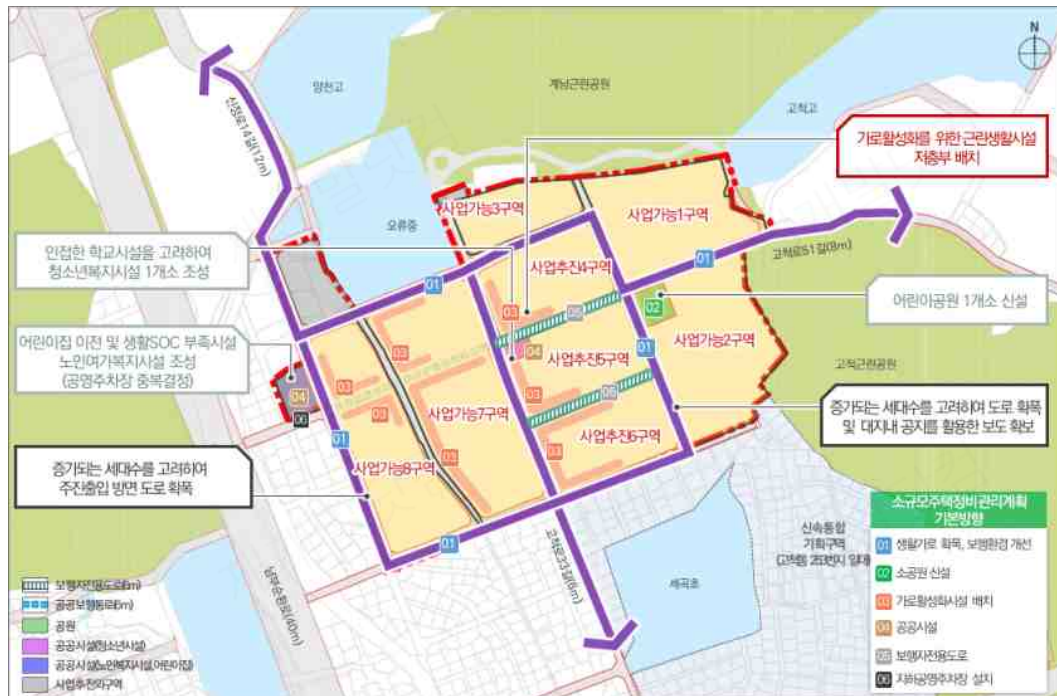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3. 종합계획(안)

○ 위치도



○ 종합계획(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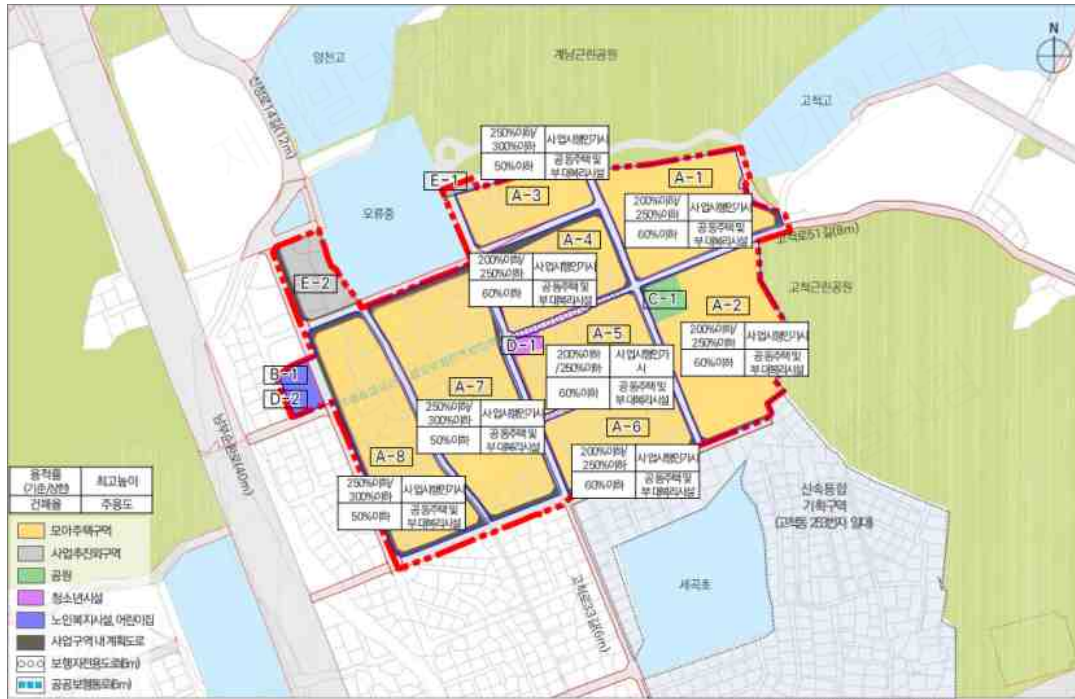
○ 관리지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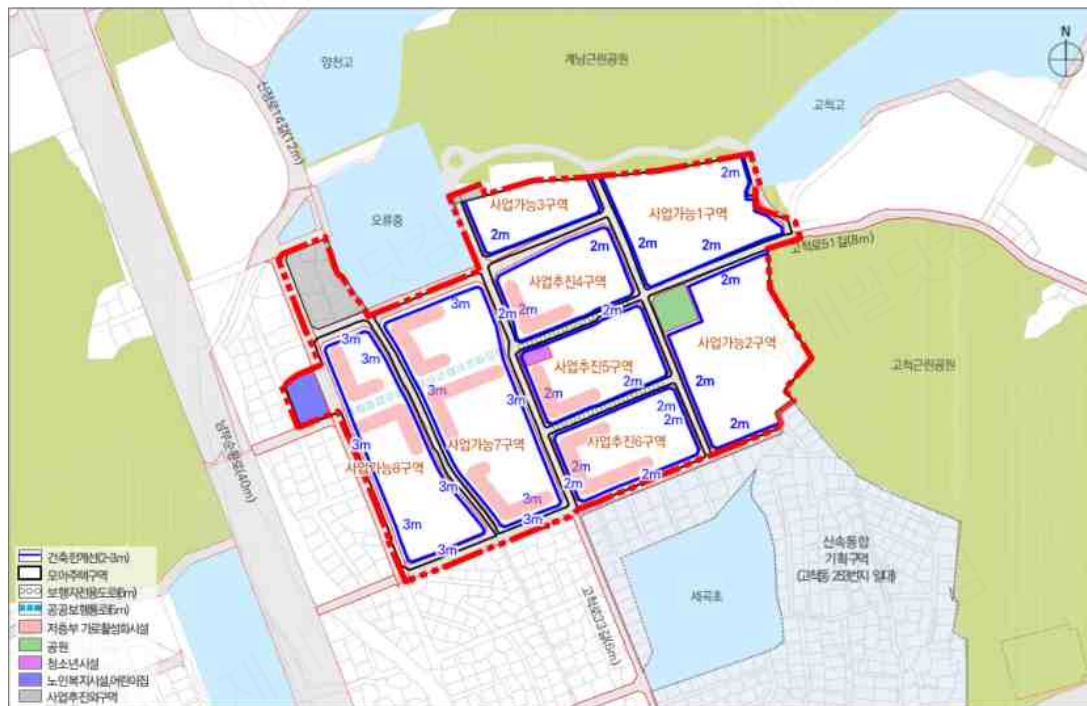
○ 토지이용계획(안)



○ 건축물의 주용도 및 규모에 관한 계획(안)



○ 건축물의 배치 및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안)



붙임 의견서 양식 1부.

의견서

1. 의견서 작성 후 방문, 우편,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2. 장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 245(구로동, 구로구청) 본관4층 도시개발과
(우편번호 : 08284)
3. 팩 스 : 02-860-2058

의견제출자	성명 · 명칭		연락처	
	주 소			
	관 계	☐ 소유자, ☐ 세입자, ☐ 기타		

의견내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의2 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의견제출자 : (서명 또는 인)

구로구청장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